

신

(변경) 합의서

갑 과 을간에 2018.1.10. 체결한 약정서 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한다.

다 음

제1조 목적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 5) 갑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매매, 대물변제 계약 등 계약업무 및 계약체결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갑이 요청하는 업무
- 6) 주택법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 법령의 변화에 따른 정관, 업무규정 등의 적법성 검토와 관련하여 갑이 요청하는 업무
- 7) 갑이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관련하여 갑이 요청하는 업무

제3조 비용 4) 항의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법무사보수는 (변경)합의일 현재의 법무사보수표에 의한다.

단, 아래의 업무범위에 대한 보수 및 지급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업무 범위	보수 (부가세별도)	지급시기	비 고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 가등기	300,000/건당	발생 시	
②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소유권이전 등기	174,000,000	브릿지대출 실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멸실등기 포함
③ 조합원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채산 처분에 대한 신탁등기	28,500,000	발생 시	변경/이전/말소 등기 포함
④ (본)변경합의에 따른 추가업무 및 법률자문	100,000,000	- 계약시 10% - 조합설립인가 시 10% - 사업인가 시 50% - 조합 청산 시 30%	조합 청산시 까지

(변경)합의서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계약이 유효하며 계약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4. 4. 1

위 갑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8

전화 031-472-9981

조합장 최양례



위 을 법무사 고원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1,505호

전화 031-386-3886

